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09

발의연월일: 2020. 9. 15.

발 의 자:이명수・임이자・이주환

강기윤・김희국・성일종

최형두 · 정희용 · 홍문표

추경호 · 김예지 · 박덕흠

이철규 • 이만희 • 윤상현

허은아 · 김성원 · 조경태

최승재 · 김승수 · 김형동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수질 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수력, 원자력, 화력발전의 경우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, 경제적 피해 등 각종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전력 발전에 따른 발전원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원자력발전에 대해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.0원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면서,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

당 0.3원으로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.

또한,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의하여 표준세율을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규정하면서 원자력과 화력에 따른 발전량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「과세 형평성」과 「자율성」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.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

트시(kWh)당 0.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하고,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,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4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6조제2항제3호 중 "0.3원"을 "1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 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	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생	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	②
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	
음 각 호와 같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	3
시(kWh)당 <u>0.3원</u>	<u>1</u> 원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	⑤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	
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	
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	
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	
가감할 수 있다. <u>다만, 제2항제</u>	<u><단서 삭제></u>
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	
<u>수 없다.</u>	